

대전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1나1285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1나128591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11. 26 선고 2021가단3179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정환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마루

담당변호사 임신기

변론종결 2023. 3. 8.

판결선고 2023. 4. 12.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11. 26. 선고 2021가단3179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답 1098㎡에 관하여 2007. 4. 19. 접수 제91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충남 홍성군 D 임야 1289㎡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법원의 증인 J는 ‘2004. 6.경 이 사건 답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J 명의가 아닌 원고 명의를 사용한 이유는, J가 매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E가 알게 되면 매매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J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답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 E는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J의 증언은 E가 명의신탁에 대하여 선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나, J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답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을 하였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가단308), 위 소송에서 원고가 J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J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그 밖에 원고가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 원고가 이 사건 답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답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용, 판사 김주연, 판사 조길상

1) 원고가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증거 외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